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91
----------	-------

발의연월일 : 2025. 9. 25.

발 의 자 : 나경원 · 김성원 · 인요한
서지영 · 조경태 · 김상훈
구자근 · 안철수 · 서천호
조배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중재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터넷 언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전국 각지에 소재한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송출하는, 이른바 '뉴스 확산' 현상이 일상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언론사 소재지 중심의 관할 규정은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

먼저,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허위·왜곡 보도를 한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언론

중재위원회 중재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시간적 부담을 감당해야 함. 이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고통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2차 피해'를 초래함.

또한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조정 신청만 진행하거나 아예 권리구제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에 의한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게다가 동일 사안에 대한 조정절차가 여러 지역의 중재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판단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중재위원회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신청 시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구술신청”을 “관할변경 및 구술신청”으로 한다.

① 조정의 관할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하고,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다만,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의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를 해당 조정의 관할 중재부로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의 관할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제24조제3항에 따라 중재에 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조정) ① <u>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u>	제19조(조정) ① <u>조정의 관할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하고,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다만,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의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를 해당 조정의 관할 중재부로 지정하여야 한다.</u>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u>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⑩ ----- <u>관할</u> ----- <u>변경 및 구술신청</u> ----- ----- ----- ----- ---